

LH 공사시방서

Korea Land & Housing Corporation Construc

LHCS 41 85 02

# 분별해체공사



##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

구분	주요내용	개정(년.월)	비고
LHCS 41 85 02	•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	제정 (2020.12.0	
LHCS 41 85 02	•2018~2020 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	개정 (2020.12.0	

목 차

1. 일반사항-----1

    1.1 적용 범위-----1

    1.2 참고 기준-----1

    1.3 용어의 정의-----1

    1.4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-----1

    1.5 제출물-----1

2. 자재-----1

3. 시공-----2

    3.1 분별해체공사의 절차-----2

    3.2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-----2

    3.3 분별해체공사-----2

    3.4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-----2

    3.5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-----2

    3.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-----2

    3.7 안전관리대책-----2

    3.8 폐석면 등의 해체·제거 작업계획 수립-----2

    3.9 제거공사 공통사항-----2

    3.10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-----2

    3.11 위생설비의 설치 등-----2

    3.12 석면 농도기준의 준수-----2

    3.13 석면함유 폐기물의 보관-----3

부록-----4



## 1. 일반사항

### 1.1 적용 범위

- (1)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LH라 한다)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,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.
- (2)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 를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 를 따른다.
- (3)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,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 %(중량기준)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1.2 참고 기준

#### 1.2.1 관련 법규

- 산업안전보건법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- 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#### 1.2.2 관련 기준

-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
- LH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

### 1.3 용어의 정의

- 석면 : 폐기물관리법 시행령(별표 1 7. 폐석면)을 말하는 것.

### 1.4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

- (1) KCS 41 85 02(1.2)를 따른다.

### 1.5 제출물

- (1)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1.5.1 제출, 신고 및 인.허가 제출물(SD-11)

## LHCS 41 85 02 분별해체공사

(1) 석면함유 물질 해체.제거 작업 신고서

**2. 자재**

내용 없음

### 3. 시공

#### 3.1 분별해체공사의 절차

(1) KCS 41 85 02(3.1)을 따른다.

#### 3.2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

(1) KCS 41 85 02(3.2)를 따른다.

#### 3.3 분별해체공사

(1) KCS 41 85 02(3.3)을 따른다.

#### 3.4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

(1) KCS 41 85 02(3.4)를 따른다.

#### 3.5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

(1) KCS 41 85 02(3.5)를 따른다.

#### 3.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

(1) KCS 41 85 02(3.6)을 따른다.

#### 3.7 안전관리대책

(1) KCS 41 85 02(3.7)을 따른다.

#### 3.8 폐석면 등의 해체·제거 작업계획 수립

(1) KCS 41 85 02(3.8)을 따른다.

#### 3.9 제거공사 공통사항

(1) KCS 41 85 02(3.9)를 따른다.

#### 3.10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

(1) KCS 41 85 02(3.10)을 따른다.

#### 3.11 위생설비의 설치 등

(1) 수급인은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·샤워실 및 작업복 경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(2) 수급인은 석면 해체·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겹의실에서

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(3) 수급인은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를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 3.12 석면 농도기준의 준수

- (1) 석면 해체.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농도는 1 m<sup>2</sup> 중 0.01 개 이하가 되어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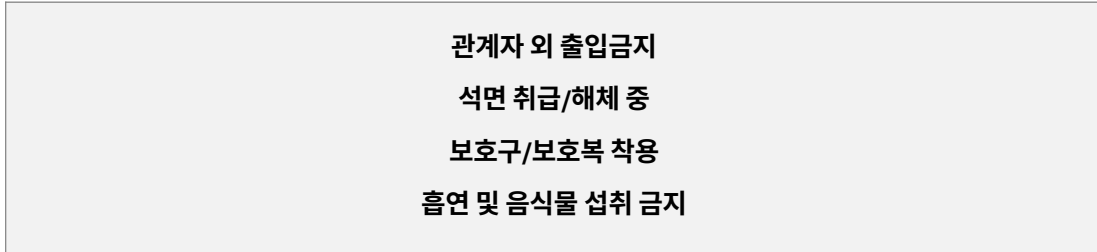
- (2) 석면 해체·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급인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.

### **3.13 석면함유 폐기물의 보관**

- (1) 수급인 석면해체·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## 부록

석면 취급 ·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



비고

1. 표지의 크기는 가로 0.7 m, 세로 0.5 m 이상
2.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0.08 m, 세로 0.1 m 이상
3.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0.06 m, 세로 0.06 m 이상
4.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. 다만, 석면 취급/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